

현대상선, 현대그룹 상대 배임소송 왜?

로지스틱스 부당 매각 입증 통해 '롯데와의 소송' 포석

로지스틱스 매각 때 부당계약 발견
160억원 지급 피소 위기 탈출구?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5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있는 가운데 현대상선이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현대상선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15건의 부당 계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때 피고소인들은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 등을 지목해 배임 혐의를 묻는 것과 관련해선 "당시 경영권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16일 현대그룹본사 기자간담회에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기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유재희 인턴기자

"현대상선에 기획본부가 있기는 하나 주요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실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 계약성사에 영향을 준 배후인물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상선이 현 회장을 고소하고 나선 것이 차후 롯데와의 소송문제를 적극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대상선이 현 회장의 배임죄와 계약체결의 부당함을 증명해 롯데와의 계

약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현정은 회장 재직 당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대상선이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매년 1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롯데 측에서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상선이 부당조항으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 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하고, 해외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만큼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롯데와의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상선의 행보를 두고 현대그룹과 경영상 관계가 사라진 만큼 현 전 회장과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따른다. 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만큼 현대상선이 지난해 회사 로고를 'HYUNDAI(현대)'가 아닌 'HMM'으로 변경하는 등 계열 분리 후 향후 회사의 재건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현 회장이 각별히 애정을 쏟았던 현대상선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6년 12월 현대상선이 경영 위기의 봉착했을 당시 자구안의 일환으로 현정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현 회장의 사재출연은 현대상선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당시 죽어가는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정은 회장 이름만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피고소인은 공개도 안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당시 현대그룹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 및 책임을 묻기 위한 명확한 근거 또는 증거에 달렸다. 또 혐의 입증에 위해 현대상선의 대외비로 분류되는 문서 등을 검찰 등에 공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대상선과 현대그룹 간 소송이 긴 소모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은미 기자·양성운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문턱 낮아진다

치료 이력 있어도 가입 가능해져
과도한 보험료 보완장치도 마련

#. 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A씨(45세)는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 갑상선 항진증약을 복용하는 B씨(55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약 복용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앞으로 위 사례의 A씨와 B씨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은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의 실손의료보험 문호를 확대하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금융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1년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투자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였다. 기존엔 위험한 취미 여부, 음주·흡연 여부 등도 따졌으나 앞으로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만 본다.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환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한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하고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되거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입 심사항목·보장에서 투자 여부도 제외된다. 기존엔 간단한 투자만 하고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57.4%

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투자 중이어서 가입이 저조했다.

새롭게 만든 상품에선 투자 여부를 가입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동일하게 했다. 다만 3개 비급여 특약인 ▲수술치료·체외충격파·중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은 제외했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았다.

다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도입된 우선공제 방식은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으로 남자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30.5% 축소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3년마다 유병력자 통계 축적,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해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구조를 변경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상품 출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재가공한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 침해'

예능장면들 따라 그려넣어 올려
저작권 중 복제권·전송권 침해
침해자가 소송해도 비용 더 들어

#. "우리 정 과정(정준하)의 아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박명수 씨, 이름에 '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웃음)."

김모(33)씨는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3분짜리 분량의 MBC '무한도전' 명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시청한 동영상은 '마스터발그림'이라는 게시자가 본방송의 화면을 연속 재생 그림으로 대체한 '[무한도전] 정과장 아들 작명하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16일 오전 조회수 65만7053회를 기록했다. 김씨는 "본래 영상을 그림판으로 그린 장면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해서 본방송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편집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 '인기'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내 공유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CID)을 피하기 위해 본래 화면보다 영상 크기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움직이는 이미지(눈 내리는 모습 등)를 넣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 해당 장면을 윈도우(Windows) '그림판' 앱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스터발그림처럼 기존 예능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하는 '총명명'계정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 계정은 예능 프로그램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했다. 마스터발그림과 다른 부분은, 게시자 본인을 상징하는 '궁'에 캐릭터를 영상 중간에 등장 시킨다는 점이다. 계



MBC '무한도전'의 주요 내용의 화면을 그림으로 따라 그려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마스터발그림'.

/유튜브 화면 캡처

시자 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소리도 넣었다.

앞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장삿썩'이다. 이 계정은 수십년 전 발표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넣어,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는 점이 웃음 유발 요소다.

구독자 수 68만2000여명인 장삿썩 영상의 조회수는 1억7711만9600여회에 이른다. 장삿썩은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예능 'SNL(Saturday Night Live Korea)' 속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으로 베껴도 '저작권 침해'

법조계는 이같은 콘텐츠 상당 부분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 대부분은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보인다"며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효력이 제한돼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은 복사와 녹음, 녹화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대한 권리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마스터발그림과 총명명, 장삿썩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며 "일반 민사소송도 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 jcker@